

웅지세무대학교	성희롱및성폭력예방과 처리에관한시행세칙	문서번호	7-6-02(M)-1
		제정일자	08.05.01
		최근개정	13.01.01
		주관부서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공개	공 개

웅지세무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거하여 웅지세무대학교 구성원을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의 처리 절차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웅지세무대학교의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웅지세무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규정 제3조의 교원.직원.학생은 본교에 재·휴직, 재·휴학 중인 자를 말한다.

③ 규정 제3조의 직원에는 부속기관.부설기관의 근무자 또는 연구원, 학교가 사용자의 지위로서 고용한 용역인, 파견 근로자, 일용 인부인 등 일체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제3조(성희롱 예방교육) 상담소는 연1회 이상 본교 구성원(학생, 교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사건의 조사와 상담) ① 상담소는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 시 피해자에게 사건처리절차, 권리 구제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상담 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원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상담원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 교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상담소는 성희롱,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피신고인 및 제 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2항을 준용한다.

⑥ 신고 된 사건의 조사와 해결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중재) ① 상담소장 혹은 상담원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희롱 대책위원회의 회부 전에 가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②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양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중재하며, 중재로부터 발생한 합의사항을 가해자가 실행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성희롱 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피해자는 특정 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성희롱 대책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성희롱 대책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② 심의 시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이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 ③ 위원회는 사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피신고인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심의, 의결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 결과를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교원·직원은 해당 위원회에 이관한다.

제 8 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複數)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조치를 할 수 있다. 공개사과는 학교 내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때 학과, 이름 등 개인신상정보는 비실명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해자 재교육은 상담소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위원회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⑦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자 또는 사건처리과정에서의 2차 가해자에게도 징계 및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⑨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9 조(재심의) ① 사건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

제 10 조(기록 및 자료보존) ① 상담소는 성희롱, 성폭력사건 관련자와의 면담 및 조사내용을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② 상담소는 성희롱, 성폭력사건의 진위여부조사, 처리과정 등의 전 과정의 기록을 보존한다.

부 칙 <1판-제정/시행 2008.05.01.>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판-개정/시행 2013.01.01.>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